



#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지원단 구성(안)

2019. 9. 26.

사법행정자문회의

## 1.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지원단 구성

### 가. 개요

#### ■ 근거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11조

##### 제11조(운영지원단)

- ①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을 둘 수 있다.
- ② 운영지원단장과 운영지원단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.

#### ■ 임무

-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일정 수립 및 구체적인 운영 지원
- 각 분과위원회 구성, 운영 및 회의 지원
- 분과위원회에서 연구·검토를 마친 경우 곧바로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바(사법행정자문회의의 규칙 제9조 제4항), 그 보고절차의 수행

### 나. 운영지원단 구성(안)

#### ■ 운영지원단장(공동)

- 홍동기 기획조정실장
- 최수환 사법지원실장

#### ■ 운영지원단원

- 이한일 기획총괄심의관, 박노수 사법지원총괄심의관, 김영훈 인사총괄심의관
- 강지웅, 한종환 기획조정심의관, 이정목, 김보현, 이영미, 양석용, 정현미,



---

유제민 사법지원심의관, 이인수, 배진호 인사심의관, 유동균 정보화심의관

- 안소율 기획운영담당관, 고원혁 기획운영담당관실 사무관, 서현웅 인사총괄  
심의관실 사무관

※ 향후 분과위원회가 더 설치될 경우 그에 맞추어 운영지원단원 추가 지  
명 가능